

의안번호	2216367
의 퇴 인	김종민 의원
회 답 일	2026. 3. 31.
추계번호	26A048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정수를 현행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전담 기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4,600만원, 2031년 2억 9,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4억원(연평균 2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안 제 36조)	246	278	285	292	299	1,400	280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3항) － 1.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기반구축 및 추진방안 －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 4.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5.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6.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7.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 －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음(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6조(교육명령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별점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 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기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7조(과징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제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20조(기술 임치제도)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21조(기술 임치제도 활용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제20조에 따른 기술 임치제도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기록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2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1. 제21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 2. 제29조에 따른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지원 － 3. 제30조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안 제2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1.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 3.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 4.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 5.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11	안 제25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1.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지침의 제작·배포 － 2. 해외 기술유출에 관한 실태조사 －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 및 상담·자문 － 4. 해외 기술보호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 5. 그 밖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2	안 제26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7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4	안 제28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교육)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5	안 제2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방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의 침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6	안 제3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보안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31조(피해입증 지원)	○ 정부는 법 위반행위로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 업무 지원사업 － 2. 중소기업이 보유한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증거 확보·복원·분석 등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 －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재량규정
18	안 제32조(피해회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련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33조(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특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기반조성과 신속한 피해회복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 감면 등 지원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재량규정
20	안 제34조(국제협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1. 보안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 2.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3.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 4.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 5. 국제 전시회·학술대회 등의 참석 및 개최 － 6.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21	안 제35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2	안 제36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 중소기업기술(비공지성을 요하지 아니한다)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제2항) － 1. 분쟁의 알선·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 2.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 3.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9항)	재량규정
23	안 제43조(조정·중재비용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4	안 제49조(조세에 관한 특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25	안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6	안 제54조(벌칙)	○ 타인의 중소기업기술을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0조에 따른 기술 임치를 등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제1항) ○ 제5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항) － 1.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라목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4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항)	의무규정
27	안 제55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무규정
28	안 제56조(과태료)	○ 제11조제4항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2항)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X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X	
3	안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X	
4	안 제8조(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X	
5	안 제16조(교육명령 등)	X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교육명령을 부과하는 별점기준, 기업의 교육비용 부담 여부 및 수준을 현 시점에서 알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6	안 제17조(과징금)	X	과징금 부과에 따라 재정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과징금 부과 건수 및 규모 등의 합리적인 가정이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7	안 제20조(기술 임치제도)	X	개정안에 따라 수치인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여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어려움
8	안 제21조(기술 임치제도 활용 지원)	X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9	안 제2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X	
10	안 제2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X	
11	안 제25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X	
12	안 제26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X	
13	안 제27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X	
14	안 제28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교육)	X	
15	안 제2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X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6	안 제3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X																
17	안 제31조(피해입증 지원)	X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원) <table><tr><th>내역</th><th>2026 예산</th><th>산출근거</th></tr><tr><td>손해액 산정 업무 지원</td><td>1,250</td><td>수수료 지원 33개사 × 30백만원, 연구용역비 등 260백만원</td></tr><tr><td>디지털 포렌식 지원 등</td><td>100</td><td>20건×5백만원</td></tr></table>	내역	2026 예산	산출근거	손해액 산정 업무 지원	1,250	수수료 지원 33개사 × 30백만원, 연구용역비 등 260백만원	디지털 포렌식 지원 등	100	20건×5백만원						
내역	2026 예산	산출근거																
손해액 산정 업무 지원	1,250	수수료 지원 33개사 × 30백만원, 연구용역비 등 260백만원																
디지털 포렌식 지원 등	100	20건×5백만원																
18	안 제32조(피해회복 지원)	X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원) <table><tr><th>내역</th><th>2026 예산</th><th>산출근거</th></tr><tr><td>법무지원단</td><td>600</td><td>법률자문 지원 110개사×5백만원, 피해구제 2개사×25백만원</td></tr><tr><td>통합기술보호 지원반</td><td>810</td><td>현장자문 지원 900건 x 0.9백만원</td></tr><tr><td>조정·중재</td><td>944</td><td>조정·중재 위원회 운영 944백만원</td></tr><tr><td>정책보험</td><td>160</td><td>정책보험료 40개사×4백만원</td></tr></table>	내역	2026 예산	산출근거	법무지원단	600	법률자문 지원 110개사×5백만원, 피해구제 2개사×25백만원	통합기술보호 지원반	810	현장자문 지원 900건 x 0.9백만원	조정·중재	944	조정·중재 위원회 운영 944백만원	정책보험	160	정책보험료 40개사×4백만원
내역	2026 예산	산출근거																
법무지원단	600	법률자문 지원 110개사×5백만원, 피해구제 2개사×25백만원																
통합기술보호 지원반	810	현장자문 지원 900건 x 0.9백만원																
조정·중재	944	조정·중재 위원회 운영 944백만원																
정책보험	160	정책보험료 40개사×4백만원																
19	안 제33조(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특례)	X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부담 감면 등의 지원기준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특례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어려움															
20	안 제34조(국제협력)	X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1	안 제35조(중 소기업기술 보 호 포상)	X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항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2	안 제36조(중 소기업기술분 쟁조정·중재 위원회의 설치)	O	위원회 구성 조정 등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계획 을 고려하여 추계
23	안 제43조(조 정·중재비용 등)	X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항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4	안 제49조(조 세에 관한 특 례)	X	
25	안 제51조(권 한의 위임·위 탁)	X	
26	안 제54조(벌 칙)	X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되 나, 현 시점에서는 벌금·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 금액 등 을 가정하기 곤란하여 추계하기 어려움
27	안 제55조(양 벌규정)	X	
28	안 제56조(과 태료)	X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재 수행 중인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개정안의 취지가 현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아울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역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신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계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재량 지출성 사업의 예산 편성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안 제36조)

- 개정안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의 발생이 예상됨
- (위원회 위원 정수 증원)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과 경상경비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50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47명으로, 위원회 위원 수가 100명으로 확대될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의 90%인 90명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
 - 회의 횟수는 분기당 각 1회씩 연 4회로 가정하되, 위원회 구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7년은 하반기에만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을 준용하여 30만원으로 가정
 -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위원 정수를 최대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600만원, 2028년 이후 매년 5,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억 3,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위원회 위원 수 증원	26	52	52	52	52	2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전담기관에 사무국 설치 및 위원회 전문위원 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추가 인력 고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에도 법적 근거는 없으나 사무국 형태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원의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된 상태
 - － 2026년 예산 기준 운영경비 6,000만원, 전문위원 인건비 3억원 등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전담기구 설치 근거와 전문위원 제도 운영 근거가 법률에 마련될 경우 조정·중재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전문위원 2인을 추가로 고용하고, 사무국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1)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지급

2)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차. 위원회 참석비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전문위원 1인당 인건비를 1억원으로, 사무국 운영비는 연간 2,000만원 추가 소요 될 것으로 가정
-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 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변호사 등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2,000만원, 2031년 2억 4,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1억 6,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전담기관에 사무국 설치 등	220	227	233	240	247	1,167

- 종합하자면, 안 제36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전담기관에 사무국 설치 및 위원회에 전문위원제도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4,600만원, 2031년 2억 9,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4억원(연평균 2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의 설치(안 제 36조)	246	278	285	292	299	1,400	2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계획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아울러 재정수반요인 중 현재 수행 중인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개정안의 취지가 현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장설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654	shjang@assembly.go.kr